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55

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성원·김상훈

김소희 · 정동만 · 최보윤

서천호 • 박수민 • 김위상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, 「농어촌정비법」 등에 따른 교환·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,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.

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 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,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 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을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	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
등) ①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	<u> 두</u>) ①
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	
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	
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	
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	
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	
서는 취득세를 <u>2025년 12월 31</u>	<u>2028년 12월 31</u>
<u>일</u>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「한국	<u> 일</u>
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	
촌공사(이하 이 조 및 제13조	
에서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	
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	
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	
②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	②
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	
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・	
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	
득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8년 12월 31일</u>
면제한다. 다만, 한국농어촌공	
사가 교환・분합하는 경우에는	

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 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 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하고,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(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 로 한정하되, 보전산지를 추가 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 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 에 한정한다)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 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④ (생략)

③
<u>2028년 12월 31일</u>
<u>2028년 1</u>
<u> 2월 31일</u>
④ (현행과 같음)